# LED 등기구 규격 및 설치 시 방 서

2022. 05.

## 가든파이브 둘

## I. 규격 시방서

1. 사업명: LED 등기구 교체공사

#### 2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가든파이브툴(이하 "도급인"이라 한다)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(T5 28W×2EA)를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등기구교체 공사에 적용한다.

#### 3. 현장여건 조사

같은 규격의 LED 조명 이라 할지라도 설치여건은 각 장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교체될 기존 조명의 제품특성과 설치될 장소의 천정마감재, 취부여건 등을 조사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.

#### 4. 재 료

- 가. LED조명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고효율인증제품 및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다. 내부전선은 90℃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라.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
- 마. 조명기구는 점검, 청소,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,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
- 바. 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.
- 사. 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아. LED 조명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,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면에는 정전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자. 납품될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, 적 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.
- 차. LED 조명은 무수은, 무연납, 무카드늄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어야 한다.
- 카. 본 규격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 조명 제품특성상 필요한 내

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#### 5. 제작 및 납품기준

- 가. 본 현장에 납품되는 LED 조명 규격시방서와 동일시 또는 이상이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, 내선규정,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, KS (한국산업표준)를 준용하되 불분명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"도급인"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나. LED 조명은 고효율인증, KS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다. LED 조명과 별도로 전용컨버터(SMPS)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청구없이 호환성이 검증된 컨버터와 연결에 배관배선 등의 부속자재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.

#### 6. 제작 및 납품전 사양에 대한 승인

- 가. 규격시방서는 현장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될 장소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(이하 "수급인"이라 한다)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"도급인"에 승인요청 서류와 SAMPLE을 설치하고 승인받은 후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다. 승인요청서류 및 SAMPLE
- 1) 인증서 : 고효율, KS
- 2) 제품상세도
- 3) SAMPLE 설치 : 가든파이브툴 지정장소에 시범설치
- 4) SAMPLE LED칩 제출

#### 7. 기술요구사항

- 가. 발광면으로 인한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.
- 나. 제품 일반사항
- 1) 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.
- 2) 발열에 의해 조명기구의 변형 또는 변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벗겨짐, 부식되지 않도록 정전 분체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.

#### 8. 규격 및 수량

### 물 품 규 격 서

품 명 **평판형 LED 등기구** 수 량 500EA

규격: 25~32W LED 평판형

기존 T5 28W×2EA 등기구 매입 치수

(1173 × 폭 250 × 높이 70 현장설명회 샘플 등기구 실측)

발광소자 : 국산 LED칩 5개 회사 한정

(삼성반도체, LG이노텍, 서울반도체, 동부LED, 루멘스)

광효율 : 140 lm/W 이상 색온도 : 5,500~6,000K

SMPS : 고효율 및 KS 인증, 원산지(대한민국)

역 률: 0.90 이상

※ SAMPLE 설치 승인 완료 후 제품 납품

규격서

#### 9.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

- 가. "수급인"은 "도급인"이 요구하는 성능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승인 후 납품되었다하더라도 설치가 곤란하거나 사용중 제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량반품 처리하며,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
- 나. "수급인"은 "도급인"의 담당자가 자료제출 요구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"수급인"이 부담한다.
- 다. "수급인"은 납품 및 설치 후 "도급인"의 담당자에게 설치 전/후의 조도측정치를 제출하도록 한다.

#### 10. 하자보증기간

- 가. 본 LED 조명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**5년**으로 하며, 하자보증이 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"수급인"은 전량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

#### 11. 포장 및 운송

취급 및 운송중 제품의 손실, 파손 발생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, 운송비는 "수급인"이 부담한다.

#### 12. 납품

- 가. 납품시 "도급인"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, "도급인"의 담당자 검수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나. 제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**30일** 이내로 한다. 다만 협의 후 변경될 수 있다.

### Ⅱ. 설치시방서

#### □ 일반사항

- 1. 공사명: 가든파이브툴(이하 "도급인"이라한다) LED 등기구 교체공사
- 2. 공사기간 :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
- 3. 공사내용 : 기존 등기구 T5 28W×2EA를 철거한 후 LED 평판형 등기구로 교체 하고 등기구 설치 시 엠바 보강할 것
- 4. 사용자재 : 사용자재는 "도급인"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고 특히 시방에 명시된 자재는 시방에 준하고 기타 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한다.
- 5. 원상복구 : 공사 중 부주의로 "도급인"의 시설물 등에 파손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 복구한다.
- 6. 산재사항 : 공사 중 부주의로 인명 등 재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는 "수 급인"이 부담한다.
- 7. 이의신청 : 공사 중 시방서의 해석 차이등 공사의 진행에 의견 차이가 있을시 쌍 방 합의하에 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할시 "도급인"의 의견에 따른다.

#### 8. 자료제출

- 가. 착공 전 제출서류 : 착공계, 공정표, 사용자재승인서, 기타 "도급인"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다.
- 나. 착공 후 제출서류 : 준공계, 준공내역서 및 관련증빙자료, 공사사진첩("3X5"규격이상 착공전, 작업중, 작업후 촬영), 제품 카다로그(취급설명

서), 품질보증서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.

9. 작업현장 및 작업시간은 "도급인"이 지정하는 시간에 준하여 작업 한다. (단 일과 시간에 작업을 요할시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작업 한다)

#### 10. 현장대리인

"수급인"은 공사 현장에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각종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.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다.

#### 11. 시공

- 가. 본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과 본 시방서 및 내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나. 도면 및 시방서 상에 상호 상이점이 있을 때는 "도급인"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.
- 다.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모두 KS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 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" 도급인"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라.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"도급인"의 승인을 받는다. 또한,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" 도급인"의 승인을 받는다.
  - "수급인"은 "도급인"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작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,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.

#### 12. 시공입회

"도급인"이 지정한 중요한 공정에 이르렀거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재시 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"도급인"의 입회하에 시공하도록 한다.

13. 하자보증 : 시공자가 착공 진행한 공사 범위에 대하여는 준공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.